수입식물 검역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 054-912-0616

≪ 목 차 ≫

Ⅰ.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Ⅱ. 검역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Ⅲ. 검역준비 및 안전 조치

Ⅳ. 수입식물 검역방법 및 절차

Ⅴ. 검역결과 처분

Ⅵ. 벌칙 및 과태료

Ⅶ.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인정기준

Ⅷ.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Ⅸ. 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Ⅹ. 가공품 품목 확인

Ⅺ. 병해충 신고 의무화

Ⅰ.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

①식물검역대상물품은 ②수입자가 ③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④지체없이 신고

1. 식물검역대상물품

□ 종자, 묘목, 접수·삽수, 구근, 곡류, 과일, 채소, 화훼, 목재, 한약재, 기타, 병해충 등

⇒ **수출입통관편람 HSK 번호별로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표기된 것 모두가 대상**

□ 가공품목이라 하더라도 HSK 번호별로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검역신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2. 수입자

□ 수입통관하려는 자를 말함

⇒ **실화주(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화주가 해당**

3. 처음 도착 수입항

□ 수입항과 그 수입항 인근의 지정된 수입식물 검역장소

⇒ **검역을 받지 않고 상기 장소외의 장소로 운송한 경우 보세운송 위반(과태료)**

□ 수입항 외의 지역으로 보세운송하여 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 외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로 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

○ 정부 인정 국제박람회장 운송

○ 서류대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로 지정받은 장소로 운송

□ 수입 중, 운송 또는 보관시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안전관리 조치

○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보관하거나 천막 등으로 덮는 등의 조치

4. 지체없이 신고

□ 지체없이 신고 : 첫 번째 검역장소 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은 해당지역 첫 번째 검역장소 반입일로부터 10일

⇒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

□ 지체하여 신고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사유서 및 관련 내용 증빙 서류 첨부 제출)

○ 수출자로부터 무역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 무적화물인 경우

○ 운송업체에서 도착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 천재지변,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Ⅱ. 검역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관세청 UNIPASS 시스템에서 ②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관할 기관 선택

□ 검역을 받고자 하는 장소의 관할 기관 확인 후 선택

○ 각 지역본부, 사무소별 관할구역은 검역본부 홈페이지(기관소개/관할구역) 참조

2. 검역장소

□ 수입식물 검역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검역 가능

○ 특히, 종자, 묘목 등 재식용식물은 컨테이너 검역이 불가능하며, 검역장소로 지정된 곳이라 하더라도 검역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유의 필요

⇒ **해당 검역장소측에 수입식물 검역 가능여부, 관할 검역기관 등을 사전문의**

3. 신규 수입업체 등록

□ 처음 수입함에 따라 업체코드가 없는 경우 검역을 받고자 하는 관할 지역본부·사무소에 연락하여 사전에 업체코드를 부여 받은 후 검역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여백에 연락처를 추가 기재하여 팩스 등으로 제출

4. 품목 코드 선택

□ 수입하는 품목의 이름을 검색하여 해당 품목코드를 선택 입력하되 아래에 유의

○ 용도(재식용, 비재식용), 상태(신선, 건조, 냉동 등)를 명확히 확인

○ 품목명은 수정 가능하나 가급적 그대로 사용 권장

○ 품목코드가 없는 경우 기타코드 활용 가능(해당 지역본부·사무소 문의)

5. 학명 기재

□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학명을 반드시 기재

※ 학명은 수출국 식물검역증 이나 수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6. 신청인 요구사항 적극 활용

□ 서류검역이나 가공품 품목 재차 수입시 현장검역시의 신청서번호 검사일자 등을 기재

□ 현장검역 희망일시, 입회자 연락처 등 자유롭게 기재 가능

7. 신청서 처리현황 확인

□ 신청한 사이트(UNIPASS)에서 확인 가능

○ (UNIPASS에서 수신동의시) 핸드폰 SMS 또는 E-mail로 통지 받을 수 있음

8. 검역신청 가능한 시기

□ 화물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시점에 검역신청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세관에 적하목록이 제출된 시점부터 검역신청 가능

9. 첨부서류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첨부대상 품목에 한함)

※ 반드시 원본 제출 필요

III. 검역 준비 및 안전 조치

1. 검역 준비 조치

□ 검역시 운반, 개장, 재포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식물검역대상물품 안전관리기준

□ 수송하거나 보관시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기준을 따라야 함

○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 약제살포 후 운송(자세한 내용은 교재 참조)

※ 원목·제재목 등 목재류는 동절기(1, 2 및 12월) 중 일일 최고 기온이 15℃ 미만이거나 결빙되어 있을 때에는 상기 조치없이 운송 가능

Ⅳ. 수입식물 검역방법 및 절차

1. 검역 방법

□ 서류에 의한 검역

○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검역신청서, 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는 것

- 수시로 현장검역을 실시함

* 서류검역 대상식물 : 건화, 견과류, 건과류, 건채류, 분말류, 영하 17.8℃ 이하로 냉동된 과실류·채소류 중 검역본부 고시로 정하고 있음

□ 현장 검역

○ 식물검역관이 검역장소에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금지품 유무, 병해충 감염여부 등을 검역하는 것

□ 실험실정밀검역

○ 현장검역결과 채취한 병해충, 시료에 대해 실험실에서 현미경 관찰,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의 방법에 의해 정밀하게 검사하거나 병해충을 분류동정 하는 것

* 대상식물 : 종자류, 묘목류, 구근류 등 재식용 식물, 생과실, 생채소류, 화훼류 등

□ 격리재배검역

○ 공항만에서의 수입검역 과정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등의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지정포장(온실 또는 망실 등)에서 격리시킨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여 생육과정 중에 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역하는 것

* 대상식물 :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 뿌리,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 및 삽수 중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것, 양딸기 묘,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2. 수입검역 절차

검역신청접수
서류에 의한 검역
YES
구비서류 확인
NO
현장검역
- 파종용 및 재식용 식물
- 생과실 등 신선농산물
- 병해충 감염의심 식물
- 규제대상 의심병해충 발견
실험실검역
금지식물
비검역병해충,
병해충 미발견
폐기, 반송
합격증 발급
NO
병해충 발견
YES
비검역병해충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금지병해충
소독기능
NO
YES
합격증 발급
소독결과확인
폐기, 반송

V. 검역결과 처분

폐기·반송 처분 대상	소독 처분 대상
▣ 식물검역증 미첨부 식물 ▣ 수입항 외의 장소로 수입된 식물 ▣ 수입 금지품, 수입제한 위반 식물 ▣ 검역미필 수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 ▣ 금지병해충이 검출된 식물 ▣ 소독방법이 없는 관리, 규제비검역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 ▣ 격리재배명령 위반 식물 등	▣ 소독방법이 있는 관리, 규제비검역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

Ⅵ. 벌칙 및 과태료

벌칙 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
▣ 소독, 폐기 등 조치명령 위반 ▣ 식물검역증 미첨부 또는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알고도 사용하여 수입 ▣ 금지품, 수입제한 및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 ▣ 수입검역 거짓 신고,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행위 ▣ 격리재대상식물 유출 ▣ 소독·폐기 대상식물을 임의로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 ▣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등	▣ 보세운송 위반 ▣ 격리재배명령 위반 ▣ 격리재배 꼬리표 위조 등 ▣ 안전관리 기준 위반하여 수송·보관 ▣ 검역신고 지체 ▣ 우편수입식물 미신고 ▣ 휴대식물 미신고 등

Ⅶ.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인정기준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기준

□ 첨부가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첨부 면제

○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휴대, 우편, 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 목재류,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 허가받은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 무환으로 수입하는 비재식용 식물

○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을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되고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 발행의 ‘품질 및

상태증명서', '수출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 수입되는 경우

○ 재수출증명서가 첨부된 식물

【특급탁송 및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기준】

구 분		단위	기준수량	비 고
묘목류(삽수·접수 포함)		개	10 이하	
구근류		개	100 이하	
종자류	소립종	g	100 이하	
	중·대립종	g	500 이하	

2. 식물검역증명서 유효성 인정 기준

□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각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증명서 번호, 수입국명, 수출자, 수입자, 원산지, 품명 및 수량, 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과 서명(직접 기재), 발행일자(화물 출발일 이전)

□ 증명서와 수입화물이 상이하더라도 인정하는 경우

○ 수량 : 순중량이 다르더라도 총중량 및 포장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 분할 수입되었더라도 합계가 일치하는 경우, 기재 수량보다 적게 수입, 5% 미만 초과 수입된 비재식용 식물, 포장개수만 기재된 경우 등

○ 발행일자 : 선적 전 검역일자 기재, 수출국 대사관 등이 선적 전 검역 사실을 통보해 오는 경우

3. 식물검역증명서 미보완시 처리 기준

○ 검역신청서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 ⇒ 보완 촉구(7일 이내) ⇒ 수입자 기간 연장 요청 ⇒ 폐기·반송명령(20일) ⇒ 폐기·반송 이행기간 연장 (최대 30일) ⇒ 폐기·반송 촉구(7일)

Ⅷ. 수입금지식물 해당여부 적용기준

1. 냉동식물은 수입금지로 보지 않으나 일부는 수입금지(교재 참조)

○ 호두 열매, 가지과 식물 및 고구마속 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 가지과 식물의 생과실, 배나무아과식물의 생과실, 나무딸기속의 생과실 등

※ 냉동식물은 수출국에서 영하 17.8℃ 이하로 냉동처리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 또는 공공검사기관이 발행한 증명서가 첨부되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

2. 수입금지식물로 적용하는 경우(교재 참조)

○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열매, 풋콩류, 자루가 달린 신선옥수수 등

3.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않는 경우(교재 참조)

○ 신선한 과육이 붙어 있는 견과류, 냉동처리 고추류, 조직배양묘, 소독처리 우드칩 등

○ 열처리 또는 고열처리한 목재류, 왕겨·볏짚과 그 가공품, 네덜란드산 버섯재배물질에 혼입된 발효 밀짚

4. 금지지역 단순경유 적용 기준

□ 아래의 경우 금지지역을 경유하였더라도 금지품으로 적용하지 않음

○ 수입금지병해충이 해충(선충은 제외)인 경우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밀폐된 컨테이너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경우

- 통기공이 있는 경우 통기공 직경이 1.6mm 이하이거나 직경이 1.6mm 이하 망 부착된 경우만 해당

○ 수입금지병해충이 병원균 및 선충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과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IX. 금지품 등의 선별폐기

1. 선별폐기 규정

□ 검역본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 가능

○ 선별 불가능시 전량 폐기·반송

- 잡초의 경우에는 분쇄, 열처리 등 발아력 제거 가능한 방법으로 가공처리 가능

2. 선별 절차 및 방법

선별폐기 명령 ⇒ 선별계획서 제출 ⇒ 선별 ⇒ 완료 및 확인검역 요청 ⇒ 확인검역

1 (선별 폐기 명령) 선별이 가능한 금지품 등이 부착·혼입된 경우 폐기·반송명령서 하단에 “선별 폐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선별폐기절차에 따라 선별 폐기를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명령서 발급

○ 아울러, 소독방법이 있는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함께 검출된 경우 "규제 및 잠정규제병해충(병해충명)이 검출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전량 훈증소독한 후 선별 작업을 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

2 (선별계획서 제출)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검역기관장에게 선별계획서를 제출

○ 소독후 선별 대상인 경우 소독계획서 첨부

3 (선별작업 실시) 격리된 장소에서 바닥에 천막이나 비닐 등을 깔고 그 위에서 선별 작업 실시

○ 소독후 선별 대상인 경우 훈증소독 완료 후 선별 작업실시

○ 선별작업시 선별된 금지품과 합격대상품은 구분 적재

○ 선별작업 완료시 떨어진 잔재물과 천막, 비닐 등을 수거하여 선별된 금지품과 함께 보관

※ 선별작업 사항 등에 대해 지역본부·사무소에서 수시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

- **병해충 비산방지 조치 기준 미준수시 : 1차 계도, 2차 선별중단·전량 폐기**
- **흙 선별 기준 미준시 : 선별중단·전량 폐기**

④ (선별완료 시 확인검역) 선별 완료시 '선별완료신고 및 확인검역 요청서' 제출 ⇒ 식물검역관이 확인검역 실시

○ (컨테이너 적재물품) 컨테이너에서 꺼내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시

○ (식물검역대상물품)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의 2배를 추출하여 실시하고, 병해충 혐의가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 실시

○ (비식물검역대상물품) 선별된 금지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의 2배를 추출하여 실시

⑤ (선별확인 결과 조치) 아래와 같이 조치

○ (완전 선별 인정) 선별된 금지품에 대해 폐기대상수량 확인서 발급

○ (금지병해충, 소독방법 없는 병해충 검출시) 전량 폐기

○ (선별 미흡) 전량 폐기

⑥ 기타 유의 사항

○ 선별 및 폐기는 폐기명령서에 기재된 폐기기간(연장 기간 포함)내에 완료되어야 함

○ 선별확인검역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폐기명령 위반으로 조치

X. 가공품 품목(가공품목) 확인

1. 가공품목 확인 절차

식물검역 신청 ⇒ 가공품 해당여부 확인(서류 또는 현품) ⇒ 가공품목확인서 발급

2. 가공품목 확인시 필요 서류

○ 현물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공공정서 등의 서류 첨부

3. 현품확인 생략(서류 확인 처리)

○ 이전에 가공품목확인서 발급 실적이 있고 신고된 수입자·수입국·수출자·수입품목이 동일한 경우 서류에 근거하여 처리

- 다만, 최종 검역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현품 확인

4. 가공품목 처리

○ 가공품목에 해당되면 가공품목확인서 발급

○ 규제해충 등 검출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적용하여 처리(소독 등)

XI. 병해충 신고의무화

1. 신고의무화 대상

○ 수입자,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업무 종사자

2. 규제병해충 발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

○ (1회) 150만원, (2회) 250만원, (3회) 400만원

3. 신고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

○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단위별로 소독(다만,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 또는 반송)

4. 포상금 지급

○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때(금지병해충 70만원, 관리병해충 30만원)